

# GATT政府調達協定 加入과 重電機業界 의 對應方案

\* 產業研究院 貿易政策室 責任研究員

\*\* 產業研究院 貿易政策室 研究員

尹宇鎮\* / 韓振奎\*\*

## 1. 序

정부조달은 政府 및 政府의 직접적 統制를 받는 機關이 행하는 財貨의 購買, 리스 및 렌트契約을 의미한다. 政府調達은 非商業的 去來라는 特수성으로 인해 一般商品의 交易과는 달리 GATT의 無差別原則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내업자 및 특정 수입업자에 대한 선별적 특혜조치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1974년~1979년간 개최된 東京라운드(Tokyo Round)에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政府調達의 貿易歪曲效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外國入札者에 대한 內國民待遇를 골자로 하는 政府調達協定(GPR :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협정체결과정에서의 선진국들의 독주, 협정의 실효성결여 및 실질적인 개도국 우대조치의 결핍 등의 이유로 인하여 開途國들의 協定加入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이 협정의 가입국은 美國, 日本, EC(9개국) 등 2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開途國으로서는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만이 가입하고 있다.

금년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GATT 多者間貿易協商인 우루파이 라운드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을 포함한 10개의 多者間貿易協定(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의 개정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政府調達協定에 관하여는 협정적용대상의 확대, 개도국우대조치, 조달절차의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들은 協定加入國의 擴大努力를 경주해 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GATT 우루파이 라운드와 같은 多者間機構의 활용과 병행하여 선발개도국에 대한 雙務의 次元의 조달시장開放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회피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치를 고양시키고 아울러 선진국 調達市場參與를 통한 시장확대를 도모코자 政府調達協定에의 加入을 추진 중에 있다. 以

下에서는 이 協定의 개요와 추진현황을 간략히 고찰하고 協定加入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업계, 특히 중전기 분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政府調達協定의 概要

1979년 체결된 政府調達協定은 協定文 자체의 불완전성과 각국의 차별적 조달관행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協定文條項의 不明確性에서 발생하는 解釋上의 差異, 協定適用을 회피하기 위한 契約細分化問題, 측박한 입찰준비기간 등으로 인하여 정부조달협정이 창출한 貿易擴大效果는 당초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協定加入國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타결하고 보다 자유로운 시장접근기회의 확보를 위하여 1988년 2월 제1차 개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政府調達協定'은 東京라운드 때의 協定文과 1988년의 改正議定書를 포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協定은 원칙적으로 13만 SDR(약 1억 원) 이상의 모든 物品調達(구매, 리스임차 및 할부구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締約國 정부가 협정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편법으로 契約을 分割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協定 第1條의 1(b)에는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하여同一類形의 物品調達이 복수의 계약 등에 의한 경우에는 前(會計) 年度의 계약실적 또는 과거 12個月間의 조정계약실적을 실제가액(추정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協定 第2條는 內國民待遇 및 無差別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각 締約國은 모든 締約國의 물품(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공급자)에 부여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으며, 특정국가의 물품(공급자)만을 우대할 수도 없다. 아울러 외국과의 제휴 또는 소유정도, 국내 법인설립 여부 등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수입과 관련된 關稅 및 부과금은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差別性을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協定 第4條는 入札과 관련된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각 체약국의 조달기관이 작성한 기술사양은 i) 디자인보

다는 성능을 위주로 (in terms of performances) 작성되고, ii) 국제표준, 국내기술규정 또는 공인된 국내표준규격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協定 第5條 및 第6條는 入札節次 및 情報의 제공과 관련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입찰절차와 관련된 第5條는 특히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協定은 入札의 종류를 모든 공급자가 응찰할 수 있는 公開入札,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제출을 허용한 공급자만이 응찰할 수 있는 選擇入札, 조달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선정하는 單一入札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공개입찰과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은 協定의 부록Ⅱ에 등록된 출판물에 구매계획을 公告해야 한다. 이 공고는 物品의 성질과 수량, 절차, 기일, 지불조건 및 제반관련 정보등 상세한 내용<sup>1)</sup>을 수록해야 하는데, 이와 아울러 조달기관은 i) 계약의 主對象物品, ii) 入札書 提出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기한, iii) 계약관련 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담고 있는 要約文을 GATT 公式言語(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공표해야 한다.

입찰서는 서면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表日로부터 40일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조달기관은 契約을 체결하지 않는 한 最低價格 또는 입찰공고에 명기된 評價基準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달기관은 契約의 낙찰후 60일 이내에 부록Ⅱ에 등록된 출판물에 낙찰내용과 낙찰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조달기관은 비낙찰자에게도 낙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계약이 낙찰되었음을 문서 또는 출판물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낙찰되지 않은 이유에 만족하지 않는 응찰자를 추가적 정보를 요하는 응찰자를 위한 연락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隨意契約(단독입찰)을 실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 협정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13만 SDR을 초과한 물자조달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이루

註1 : 상세한 내용은 정부조달협정 제5조 5(a)~(h) 참조

어지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 국한된다.

i) 公開 및 指名應札者가 없거나 입찰의 기본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ii) 藝術作業이나 特許 · 著作權 등 배타적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하여 特定供給者에게만 입찰을 한정해야하며 대체품이 없는 경우

iii)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초래된 국도의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공개 또는 선택입찰로는 시한내에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iv) 공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장비와의 호환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기존 공급품 및 설비의 부분품을 교체 또는 확충하는 경우

v) 연구 · 실험 및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원형(Prototype) 또는 시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 밖에 協定의 7條는 협정가입국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과 紛爭解決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9條는 協定加入에 수반되는 일반사항들을 담고 있다. 協定 第9條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데 13만 SD R을 초과한 물자구매에 대한 협정의 적용은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된다.

i) 무기, 전쟁물자 등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

ii) 공중도덕, 질서와 안녕, 생명, 보건 및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조달

iii) 장애자, 자선단체 및 재소자 생산품등의 보호를 위한 조달

### 3. 加入推進 現況 및 波及効果

#### 가. 加入推進 現況

우리나라가 政府調達協定에 加入하고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1979~82기간 중 이미 3차에 걸쳐 加入協商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調達廳을 양허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國內生產이 不可能하거나 비교적 國際競爭力이 확보된 품목을 중심으로 한 31個<sup>2)</sup> 품목(CCCN 4단위 기준)을 양허대상으로 제출하였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양허수준에 대하여 先進國들은 讓許品目的 구매총액이 미

미하고 그들의 關心品目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相互主義原則에 위배되므로 協定加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 후 우리나라의 政府調達協定 加入論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로서 이는 주로 對美通商關係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져 왔다. 美國은 1989년 소위 '슈퍼301조 協商'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차별적 정부조달관행, 특히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DACOM 등의 조달관행을 지적하고 政府調達協定 加入問題를 제기하였다. 1989년 2월에는 우리나라가 美 綜合貿易法에 따른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되었는데 그후 韓 · 美 양국은 3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하여 通信機器의 정부구매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대미통상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政府調達協定 加入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i) 世界 10大 交易國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ii)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하는 동시에, iii) 연간 약 300억 달러(추정)에 달하는 세계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協定加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89년 12월의 한 · 미 통상협상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협정가입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에 協定加入案을 GATT에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 후 금년 1월에 개최된 經濟長官會議에서는 1990년 상반기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원칙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이에 따른 加入推進作業이 진행중에 있다.

現在 政府가 마련 중에 있는 協定加入案은 가입국의 양허수준과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요구수준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허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제외)과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포괄적 협정배제(National Derogations)나 기관별 품목제한을 통하여 양허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註2: 3차 협상기준, 1차 협상시는 CCCN 4단위 기준 11개, 2차 협상시는 21개 품목이었음

#### 나. 波及效果

政府調達市場이 開放되면 현재 内資購買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한선 이상의 물자조달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국내-해외 구매선간의 차별이 불가능해지게

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時에는 우선 전술한 바와 같은 협정적용 예외조항의 활용을 통하여 양허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표1>에는 그 기준

<표1> 기준 협정가입국들의 협정배제현황

구 分	내 용
포괄적 협정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에 의한 특별구매 : 일본, 이태리</li> <li>· 특정지역으로부터의 구매 : 서독 (분단 및 전쟁피해지역), 싱가포르(아세안 회원국)</li> <li>· 중소기업제품 구매 : 미국, 캐나다</li> <li>· 국가정책목적에 위배되는 구매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li> <li>· 농업진흥정책에 의한 농산물구매 : EC</li> </ul>
기관별 협정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관련부서 : 비전쟁물자(non-warlike materials)로 제한되며 positive list제시 (3개 개도국을 제외한 전가입국)</li> <li>· 체신부서 : 통신분야를 제외한우편업무(postal business)로 제한(일본, 서독,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다만, 일본은 전신통화공사(NTT)를 포함시켜 positive list를 제시</li> <li>· 철도사업 (철도사업이 공공부문인 국가) :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li> <li>· 보건성 : 이스라엘 (negative list 제시)</li> </ul>

된다. 따라서 국내업계는 필연적으로 해외업계와의 경쟁에 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상업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그 결과 해당산업의 성장 및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업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의 세계 조달시장 진출은 활기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의 調達制度가 產業政策의 한 수단, 특히 중소기업 육성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실정을 감안할 때 보완적 대책의 마련없이 政府調達協定에 加入하는 경우 조달시장개방의 經濟·社會的費用은 1차적으로 중소기업에 귀착될 우려가 높다. 大企業들은 국내조달시장개방의 반대급부로 海外調達市場으로의 영역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으나 團體入札 경험 및 능력이 결여되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일방적인 수요감퇴에 직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政府調達市場이 開放된다 해도 政府調達은 일반상품의 거래와는 상이한 구매관행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國內產業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축소될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가입국의 협정운용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

<표2> 협정가입국들의 조달현황

(단위 : 백만SDR)

국 명	가입국의 총조달액(A)	하한선이상 조달액(B)	외국조달액 (C)	비 율(%)	
				B/A	C/A
미국	20,982	15,109	1,362	72	6.5
일본	5,244	2,415	590	46	11
E (영국)	6,339	2,850	7	44	0.1
(프랑스)	2,338	1,326	2	56	0.8
(서독)	1,205	599	0	49	0
(이태리)	1,425	424	3	29	0.2
(벨기에)	389	344	1	88	0.3
(네덜란드)	189	63	0	33	0
(아일랜드)	657	50	0	0.7	0
(덴마크)	75	0	0	0	0
(룩셈부르크)	34	34	0	100	0
캐나다	593	244	20	41	3.4
스웨덴	489	236	101	48	20
노르웨이	381	128	56	33	14
핀란드	307	178	168	57	54
오스트리아	160	31	16	19	10
스위스	330	124	44	38	13
홍콩	146	91	81	62	55
이스라엘	88	63	49	71	55
싱가포르	40	23	4	57	10

협정국들의 협정배제 현황이 약술되어 있다. 아울러 기존의 협정가입국들은 정보상의 제약과 함께 행정절차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업체에 대한 낙찰의 기회는 상당히 축소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 결과 기존 협정가입국이 구매한 물자 중 해외업체로 부터 조달한 금액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 日本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EC 같은 경우는 EC域外에 낙찰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 4. 重電機產業의 現況과 問題點

중전기산업은 政府調達市場開放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클 분야의 하나로 예상되고 있다. 重電機分野는 아직까지 先進國들의 절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分野로서 이들 선진국들은 核心部品, 高技術 · 高附加價值製品을 生產 · 輸出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重電機產業은 内需中心의 수입대체형 산업으로 성장중인데 이 과정에서 政府調達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1989년 현재 우리나라 重電機產業의 需給規模는 약 4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국내생산액이 총수급액의 71.6%에 달하는 29억 달러에 머물고 있어 輸入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需要側面에서는 내수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의 내수비중은 87%를 점하고 있는 반면 1988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수출은 1989년 들어 오히려 전년대비 2.8%가 감소한

#### <표3> 중전기 분야의 수급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88	'89	'90(전망)	증가율(%)
수 요	수 출	540	525	550	4.8
	내 수	3,311	3,582	3,940	10.0
계		3,851	4,107	4,490	9.3
공 급	생 산	2,727	2,939	3,290	11.9
	수 입	1,124	1,168	1,200	2.7

자료 : 상공부

5억 3,000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중에서도 政府(또는 投資機關)의 調達比重은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韓電, 電氣通信公社 등에 의한 조달은 全體內需의 약 43%를 점하고 있는데 한전의 구매비중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압기 개폐기등 전력기기의 경우에는 生產의 70% 이상을 韓電購買에 의존하고 있으며 154KV 이상의 초고압 중전기기는 95% 정도를 한전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重電機市場은 長期電源開發計劃推進에 따라 발전 및 송 · 배전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한전의 전력관리자동화 추진에 따른 자동화 설비수요증대 등에 힘입어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1995년의 중전기 총수요는 78억 달러, 2000년에는 14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향후 2000년까지 연평균 12%의 높은 신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표4> 중전기 분야의 장기 수요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90년	'95년	2000년	증가율(%)
내 수	3,940	6,700	12,000	11.8
수 출	550	1,100	2,000	13.8
총수요	4,490	7,800	14,000	12.0

자료 : 상공부

그러나 政府調達市場이開放되는 경우 内需市場의 상당부분이 잠식될 우려도 있다. 이같은 우려는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기술구조가 二元化되고 있는, 즉 별용전선과 같은 일부분야에서는 사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 기술의 模倣 · 改良단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양질의 전기 · 통신서비스가 요구되면서 수요기관이 조달하고자 하는 중전기류의 수준이 높아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만일 국내의 기술 및 공급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궁극적으로 내수시장의 상당부분을 해외업체에 鱷食당할 우려가 있다.

이와같이 중전기기의 조달규모는 최근들어 매우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반면, 이를 품목의 국제경쟁

력은 최근들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政府調達協定加入國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교열위에 있음을 비추어 볼때 向後의 加入協定 과정에서는 협정가입을 통한 세계 조달시장에의 참여기회를 극대화하면서도 중전기분야와 같은 유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極大化시킬 수 있는努力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대응방안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협정가입을 위한協商過程에서의 대응방안으로서 이는 政府와 業界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協定加入이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에 미칠 피해를 극소화하면서 해외조달시장에서의 이득을 도모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 중전기업계가 담당해야 할 부문이다.

우선 加入協商段階에서의 양허기관 및 품목선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양허가 이루어진 기관(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철회시키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Compensation) 양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져있는 일본의 철도부문이 아직 동협정의 적용대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政府調達市場 加入方式은 다음사항들을 포함함으로써 우리업계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협정가입에 따른 시장잠식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기존 가입국들의 양허기관 및 양허품목 목록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 경제 및 산업의 발전 수준에 알맞는 양허수준을 제시하고

둘째, 중소 및 영세기업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협정적용·배제의 폭을 넓히며,

셋째, 유치 및 잠재유망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있어 중전기업계는 특히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의 양허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協定加入國들 중에는 韓

電과 유사한 기관을 양허한 예는 없다. 왜냐하면 전력생산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民營會社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분야 역시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양허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기관의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국들과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日本의 예와 같이 Positive List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나 중전기업계는 이같은 소극적 對應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개발과 供給能力의 改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원천설계기술, 소재 및 부품가공기술 등과 같은 취약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만이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協定加入國들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찰참가 노력이 필요하다. 國際入札에서 입찰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協定加入國에 支社를 두고 있는 KOTRA등 무역유관기관의 관계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즉시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시장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응찰기회 확대는 물론 이들 기업의 國際化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業界 스스로가 양질의 제품을 완벽한 아프터서비스에서 공급하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달시장의 개방은 기존 정부조달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아울러 경쟁을 통한 중전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經濟는 80년대초 이래 輸入自由化를 중심으로 市場開放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제 적어도 工產品분야에서는 先進國水準에 달하는 市場開放을 달성하였다. 더욱이 1989년 10월에는 소위 'GATT 11條國'으로의 이행에 합의함으로써 명실공히 先進貿易國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있다. 市場開放을 추진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業界가 보다 自信感을 가지고 政府調達市場의 개방에 임할 때 우리經濟의 先進化, 國際化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